10.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

ㅇ 기한의 이익이란?

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, 채무자인 회원은 당초 지정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.

ㅇ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?

- 모든 이용대금을 즉시 상환
- 연체이자 부담
-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

□ <u>파산,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,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(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등에서 정한</u> 사유)

o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.

(참고)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

-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,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
- 신용카드 이용대금(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포함)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
-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, 그 연체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/10을 초과하는 경우
-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, 경매,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등

11.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의 위험성 및 예시

- 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을 이용하여 **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** 수수료가 발생하며,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 등 계산 사례

(예시)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월잔액: 50만원, 당월 신규이용금액: 일시불 30만원, 약정결제비율: 50%, 최소결제비율: 10%,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율: 17%,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이용경과일수: 30일,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대상 외 금액: 10만원

구 분	계산방법	금액
최소결제금액	(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 액) +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 빙) 수수료 + 일부결제금액이월약 정(리볼빙) 대상 외 금액	8만원 + 6,986원 + 10만원 = 186,986원
약정결제금액	(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의 약정청구원금) +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 +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대상 외 금액	40만원 + 6,986원 + 10만원 = 506,986원
리볼빙 최소청구원금	(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 볼빙) 이월 잔액 + 당월 일부결제 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신규이용 금액) × 최소결제비율	(50만원 + 30만원) × 10% = 8만원
리볼빙 수수료	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 빙) 이월 잔액 × 일부결제금액이 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율 × 이용 경과일수/365(윤년은 366)	50만원 × 17%× 30일/365 = 6,986원
리볼빙 약정청구원금	(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 볼빙) 이월 잔액 + 당월 일부결제 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신규이용 금액) × 약정결제비율	(50만원 + 30만원) × 50% = 40만원

※ 당월에 결제해야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(506,986원)이나, 최소결제금액(186,986원)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, 잔여결제금액(32만원)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(리볼빙) 약정체결 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.

12. 위법계약해지권

- □ 카드사가 아래와 같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융 소비자보호법")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- o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
 - o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o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
 -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
- □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(계약해지요구서)에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
- □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

13.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

- □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(민원)이 있을 경우,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(www.imbank.co.kr), 고객센터(1566-5050)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.
- □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14. 자료열람요구권

- □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, 고객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□ 은행은 고객의 분쟁 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**6영업일 이내에** 해당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.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안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한 일자를 알려 드립니다.
- □ 은행은 법령,제3자의 이익 침해,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**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**

15.신용카드 해지 신청 안내

- □ **해지 신청**: 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, 은행앱,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기업회원 제외)
 - o [인터넷 홈페이지]: 홈페이지 접속 > 카드 > BC카드 소개/신청/해지 > BC카드 해지
 - o 모바일앱뱅킹(iM뱅크 앱): 앱 접속 >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> 상품 관리 > BC카드 카드정보 > 카드해지
 - [고객센터]: 1566-5050(대표번호) > ARS 5번 신용카드 업무 > ARS 6번 사용등록 및 발급 신청, 해지 > ARS 3번 신용카드 해지
 ☞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해지 신청은 9시~18시까지 가능
- □ 해지 처리 : 신용카드 해지로 인해 탈회가 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 납부, 포인트 소멸 및 환급처리 안내 등을 위해 상담 직원과 통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(고객센터 1566-5050 > ARS 0번) > ARS 3번 상담원 연결)



